

# 科學技術振興法 및 同施行令

▶ 科學技術處 振興局長

文英哲

## 1. 概要

이제 우리의 科學技術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 發展과 跳躍을 向한 覺醒과 決意에 차있읍니다.

科學技術處의 新設, 科學技術振興法의 制定, 科學技術振興 5個年計劃의 強力한 推進, 韓國科學技術研究所의 建設, 科學技術團體 및 諸學會의 活潑한 움직임等 實로 鼓舞의 事實이 아닐수 없다.

이中 科學技術振興法 (法第 1864號. 67. 1. 16. 公布) 및 同施行令 (大統領令 第3148號 67. 7. 15. 公布)의 制定은 科學技術振興을 爲한 基本母法이라는 데서 큰 意義가 있으며, 우리의 關心을 모으고 있다.

日本의 境遇 科學技術基本法案 要綱이 發表된지 2,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制定을 보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그 意義가 더욱 부각된다 하겠다.

## 2. 主要內容

### ① 科學技術의 定義 (法第2條)

科學技術이라 함은 “自然科學과 이에 密接한 關聯이 있는 社會科學의 原理原則 및 그의 成果를 利用하여 產業를 開發하고 社會福祉를 增進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에 따라 自然科學뿐만 아니라 이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社會科學 (經濟學, 經營學, 心理學, 統計學, 社會學等)까지 育成하도록 되어 있다.

科學技術振興의 第1次的 目的이 產業技術開發에 依한 經濟發展에 있다면, 技術과 產業과를 連結시켜 주는 經濟學, 經營學, 統計學等을 育成하여야 할 必要성이 크며, 또 科學技術이 近代社會를 指向하여 社會福祉의 增進에 그 目的이 있다면 社會構造, 人間關係等 分析을 爲한 社會學等의 育成은 必要한 것이다.

### ② 國民의 科學技術活動의 助成

法第3條에는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自發的인 科學技術研究活動을 奨勵하며 保護育成하고 科

學技術에 關한 認識 양  
양과 새 技術의 普及 및 指導에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도록 되어 있다.

科學技術振興을 爲한 行政主體가 國家뿐만 아니라 地方自治團體까지 包含하고 있는 点에 本法의 特性의 하나다.

科學技術振興은 政府의 힘만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全國民의 關心과 努力에서만이 可能한것이다.

“科學하는 國民”속에서만이 偉大한 科學者가 輟出되며, 著名한 研究發明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傳來의 生活方法에서 아직도 脫皮하지 못하고 가난과 非生產的, 非科學的 關心에서 헤어나고 있는 面이 아직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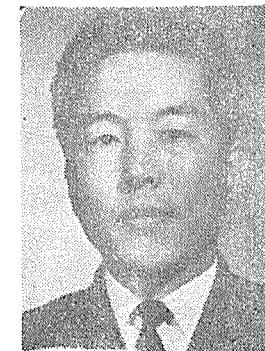
政府는 映畫上映, 冊字配布, 青少年 組織의 活動強化 地方自治團體의 積極的 關心을 通하여 國民의 科學技術活動을 助成하고 認識 양양을 爲한 캠페인을 展開할 計劃이다.

科學하는 生活은 合理的 關心을 낳고 合理的 關心은 研究와 發明을 낳는 것이다.

### ③ 科學技術振興計劃 制度의 確立

法第4條에는 “科學技術處長官은 經濟開發 計劃의 一環으로서 科學技術振興長期綜合計劃과 그 基本施策等을 樹立하고 이에 隨伴되는 業務를 綜合調整管理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는데, 法 및 施行令上 가장 要點이 되고 있다.

經濟開發 5個年計劃도 法上의 計劃制度가 아니다. 아마 計劃樹立 및 그 綜合調整 制度가 이처럼 緩密하게 確立된 것은 振興法 및 同施行令上에서 처음인 것으로 안다.



單純한 計劃의 樹立은 無意味한 것이다. 그 計劃이  
國家豫算과 一致되고 또 重複과 浪費가 없이 全體  
의으로 一定方向을 志向한 計劃이어야 하는 것이다.

科學技術關係豫算 先審制度는 科學技術處 發足 以  
前부터 科學技術界에서 論議되어온 것이다.

先審制度란 各部處에서 短片의으로 施行하는 試驗  
研究投資 為主로 하는 諸 科學技術關係豫算을豫算  
當局에서 查定前에 科學技術 專擔 行政機關에서 綜  
合調整 함으로써 國家全體 科學技術投資를 長期計劃  
에 一致시키고 重複과 浪費 없이合理的인投資를 하  
자는 制度이다.

普通過去의 例로 볼때 各部處의 科學technology關係豫算  
은 前年度對比 몇 %增加하는 形式的이고 現狀維持의  
인投資를 免치못하여集中的으로開發하여야 할 戰略  
目標乃至重要技術開發目標를 強力히 推進할수 있다.  
 더욱이나 科學technology分野는 어제와 오늘의 離은 세  
로운 分野의開拓이 重要的 것으로 各部處의 年度別  
諸施行計劃의 綜合調整은 必要한 일이 아닐수 없다.  
振興法上의 計劃의 綜合調整制度는 科學technology關係豫算  
先審制度의 計劃面에서의反映이라 하겠다.

(가) 長期綜合計劃의 樹立(法 第4條1項, 令第  
1條)

科學技術處長官은 科學technology 振興委員會의 審議와  
經濟企劃院長官의 協議를 거쳐 科學technology 振興長期  
綜合計劃과 그 基本施策을 樹立하여야 한다.

이 總合計劃에는 後述한 研究開發計劃, 人力開發  
計劃, 資源調查計劃, 技術協力과 技術導入計劃 및  
自然科學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社會科學研究計劃을  
包含한다.

經濟企劃院長官과의 協議를 거치도록 한 것은 科學  
technology振興計劃이 長期經濟開發計劃의 一環으로 推進  
되며 全體 國家投資計劃에 包含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現在政府는 “科學technology振興長期展望 및 綜合的  
基本政策等”의 樹立을 為한 作業을着手하였다.

本作業의 主要目的은 經濟開發을 支援하고 先導할  
수 있는 科學technology의 方向設定이며 戰略目標의設定  
에 있다. 이에 따라 第2次 科學technology振興 5個年計  
劃이 補完修正될 것이며, 3次 4次 5個年計劃이 樹  
立될 것이다.

(나) 年度別 施行計劃(法 第4條2項, 令 第2條)  
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위

의 綜合計劃과 基本施策을 遂行하기 為하여 必要한  
年度別 施行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長期綜合計劃은 科學technology處長官이 樹立하고 年度  
別 施行計劃은 이에 따라 各 施行部處에서 樹立하고  
施行한다.

全體綜合計劃과 施行計劃의 一致를 為하여 綜合調  
整制度를 確立하여 一貫性과 効率性 있는 投資를 期  
하도록 하였다.

即 年度別 施行計劃은 前年度 2月末까지 科學  
technology處長官이 通報한 施行計劃作成 指針에 따라  
作成하여 前年度 3月末日까지 科學technology處長官에게  
提出하고 前年度 4月 末日까지 科學technology處長官이  
綜合調整하여 經濟企劃院長官과 當該 部處에 通  
報하도록 되었다.豫算當局은 위의 調整된 計劃  
에 依據翌年度豫算을查定함으로써 科學technology  
關係豫算先審制度를 計劃面에서達成하도록 하  
였다.

#### ④ 科學technology振興委員會의 設置(法 第5條)

科學technology振興 政策樹立에 關한 長官의 諮問機關으  
로 振興委員會를 設置하고 있다. 委員長은 長官이  
되고, 科學technology에 學識과 經驗이 있는 委員 12人으  
로構成한다.

同委員會에는 農林, 水產海洋, 糟業地質, 金屬,  
機械, 化工, 繊維, 電氣外斯, 建設, 運輸, 通信, 醫  
療保健, 基礎科學, 社會科學의 14個 分科會가 있고  
各 分科會에는 2人以內의 專門家를 參加하도록 하였  
다. (令 9條, 10條)

위의 專門家들은 振興委員會에 案件 上程 前에 當  
該專門分野에 對한 研究檢討를 行할 것이다.

#### ⑤ 人力開發計劃(法 第6條, 7條, 令 14條)

法 第6條에는 科學technology處長官은 科學technology系 人力資  
源의 開發에 있어서 基準이 될 人力資源開發計劃을  
樹立하고 科學technology教育의 強化, 技術訓練의助成,  
人力의 海外進出 科學technology者의 確保 및 保護等에  
關한 指針을 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人力開發政策을 審議하고 關係部處間의 協  
助를 密切하게 하기 為하여 經濟企劃院長官, 科學  
technology處長官을 비롯한 中央官署의 長으로서 人力開發委  
員會를 設置하고 있다. (法 第7條, 令 第14條)

人力資源 및 自然資源은 우리의 潛在能力이다. 自  
體潛在能力은 科學technology振興 및 經濟開發의 原動力이

## 二 推進이다.

우리나라는 自然資源은 貧弱하나 多幸히 後進諸國에 比하여 相對적으로 諸은 教育을 받은 人口와 비교적 우수한 人間頭腦를 保有하고 있다.

지금까지 人力政策을 全國적으로 體系적인 것이 못 되고 그때의 必要에 따라 決定한데 不過하였다.

教育에 있어서의 理工系와 自然系의 違異한 比, 理工系大學의 施設擴充等의 문제, 科學技術者의 양성과 確保의 問題等 체계적이고 恒久적인 人力開發 계획樹立이 時急한 것이다.

政府는 人力개발研究소를 設置하여 人力需給問題를 위시하여 諸人力政策에 關한 계속적인 研究를 할 계획이다.

### ⑥ 研究開發計劃의 樹立 (法第8條)

政府는 科學技術의 研究開發을 위하여 研究機關의 시설, 研究課題, 研究員 양성, 研究體制改善等에 關한 계획과 지침을 樹立하도록 規定하였다.

研究開發은 科學技術의 核心적인 것이다.

日本의 科學技術 기본법要강의 主要內容도 研究기초育成, 계획研究의 促進, 研究의 推進, 研究成果의 利用促進 研究者의 確保 및 待遇等을 規定하고 있다.

政府는 研究開發投資의 적극화를 기하기 위하여 科學技術기금을 造成中이며, 研究官의 양성, 研究, 體制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 ⑦ 技術協力과 導入 (法 第10條, 令 11條)

法 第11條에는 科學技術處長官은 外國政府, 國際機構의 合理적인 技術協力의 적극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樹立하고 그施行을 調整管理하도록 規定하였다.

科學技術진흥의 要諦는 自體研究開發의 推進으로 自體의 力量내지 저력을 培養하고, 그위에 先進技術의 합리적인 導入이라 하겠다.

自體研究開發投資 없이 安價한 先進技術導入은 기술적 예속화와 市場의 隸屬化를 招來할 우려가 많다.

튼튼한 체력만이 外來 技術의 注入을 소화吸收할 수 있는 것이다.

從來 各部處에서 계획없이 산발적으로 施行해오던 技術협력을 長期종합계획하에 體系적으로 行하며, 科學技術處長官이 그施行을 종합조정할 수 있게 한 점에 큰 意義가 있다 하겠다.

技術협력계획에는 工業소유권의 導入과 供與, 訓

練生의 招請과 派遣, 技術協力を 爲한 資金·物資·用役·資料·정보의 導入과 供與·技術者·전문가·技術用役團의 招請과 파견, 事業單位는 施行하는 技術援助, 科學技術關係 國際會議파견, 해외주재관 파견에 關한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앞으로 外資導入法에 의한 技術導入도 진흥법상의 技術협력계획의 범위 내에서 조정되어야 함은勿論이다.

### ⑧ 科學技術基金의 設置 (法 第11條)

豫算회계법 第89條(特別기금의 設置)에는 事業運營上 必要할 때에는 法體로서 定하는 경우에 한하여 特別한 기금을 設置할 수 있다고 規定하였는데 法第11條는 基金設置의 근거를 마련한데 意義가 있다. 運用方法은 大統領令으로 “科學技術기금 運用規定”을 제정하였다.

본기금은 科學技術振興授資 재원으로서 큰 役割을 다할 것이다.

### ⑨ 科學技術者의 兼職 (法 12條, 令 19條)

政府는 다른 法體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公務員法, 地方公務員法等) 科學技術을 가진 公務員中 特定人을 지정하여 科學技術의 研究調查業務에 極力하게 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는데 實로 진보적인立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公務員은 公務員法上 極力이 禁止되어 있는데 科學技術系 公務員을 極力許容함으로써 수적으로 弊弱한 科學技術者를 最大限 活用하도록 하였다.

### ⑩ 表彰과 補助 (法13條, 14 條)

科學技術에 關한 發明 研究 應用 또는 그 진흥 및 企業化에 功勞가 현저한 자를 보상하고 科學技術團體에 補助할 수 있는 적극적인 科學技術振興策을 規定하고 있다.

## 3. 結語

以上이 科學技術振興策 및 同施行令의 主要內容인 바 實를 褐廣範圍한 목적과 科學技術助成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強調 할 것은 하나의 法制定만으로 소기의 成果를 達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정적으로 發展시켜 나가고, 政府와 科學技術者 나아가서는 온 국민의 노력과 誠意 結集에서만이 科學技術振興은 開花할 수 있는 것이다.